

과징금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산정기준

가.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0 이하	2
2	20 초과 30 이하	4
3	30 초과 50 이하	6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이하	2
2	20 초과 30 이하	4
3	30 초과 50 이하	6
4	50 초과 100 이하	12
5	100 초과 200 이하	14
6	200 초과 300 이하	16
7	300 초과 400 이하	19
8	400 초과 500 이하	24
9	500 초과 650 이하	31
10	650 초과 800 이하	39
11	800 초과 950 이하	47
12	950 초과 1,100 이하	55
13	1,100 초과 1,300 이하	65
14	1,300 초과 1,500 이하	76
15	1,500 초과 1,700 이하	86
16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7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8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9	2,700 초과 3,100 이하	118
20	3,100 초과 3,600 이하	124
21	3,600 초과 4,100 이하	142
22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3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4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5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6	6,700 초과	261

2. 산정방법

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

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를 같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를 같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 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